



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15, 7층
(반포동, 홍익대 강남관)
[별지 제33호서식]

공증
인가 **법무법인 민주**

(전화) T.02-591-8868
(팩스) F.02-591-5841




등부 2018년 제 6529 호

인 증 서

열람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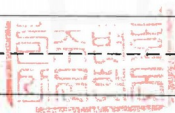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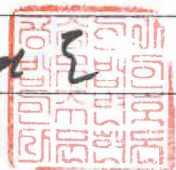
210mm X 297mm
보존용지(1종) 70g/m²

| 소 송 위 임 장 | |
|---|---|
| 사 건 | 중여해제 |
| 당사자 | 원 고 홍 봉 유 피 고 전 민 준 외 3명 |
|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표시 수임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, 다음 표시 권한을 수여한다. | |
| 수임인 | 법무법인(유한) 에이스 (220-87-02151) 대표변호사 박 영 하 서울 서초구 고무래로 6-6(반포동, 선경빌딩) 1, 2층 T : (02)3487-5000 / F : (02)555-9117 |
| 수권사항 | (1) 모든 소송행위 (2) 반소의 제기 및 취하, 반소 청구의 포기 (3) 화해 및 인낙, 참가에 의한 탈퇴 (4)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(5) 복대리인의 선임 (6) 목적물의 수령, 합의금 및 판결금(조정, 화해 결정포함) (7) 소송비용의 수령 (8) 공탁, 공탁 물 및 그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(9) 담보권 행사, 최고 신청, 담보취소신청, 동, 신청에 대한 동의, 담보 취소 결정 정본의 수령, 동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(10) 법원보관금납부 및 그 보관금의 반환청구와 수령 (11)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 (12) 보전처분 (13)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및 동 금원의 수령 |
| 담 당 변 호 사 지 정 서 | |
| 위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그 업무를 주로 담당할 변호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. | |
| 담당변호사 | 김정학, 이종걸 |
| 위임인 홍봉유  서울 서초구 마우피로 53, 105동 201호 (우면동, 코오롱아파트) | 2018. 11. 27.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수임인 확인  변호사의 경우 18011- Nº 114347 (위임장 등 부착용) 경유증표(본안) 201 . . .  서울지방변호사회(회관2) </div> |
|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| |

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15, 7층
(반포동, 홍익대 강남관)
[별지 제35호서식]

공증
인가 **법무법인 민주**

(전화) T.02-591-8868
(팩스) F.02-591-5841

| | |
|---|---|
| 등부 2018 년 | 제 6529호 |
| 인 증 | |
| 위 소송위임장-----에 기재된 | |
| 촉탁인:홍봉유는----- | |
| ----- | |
| ----- | |
| ----- | |
| ----- | |
|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사서증서의 서명날인 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. ---- | |
| 본 공증인은 위 촉탁인이 제시한----- 주민등록증----- | |
| 에 의하여 그 사람이 틀림없음을 인정하였다. ----- | |
| ----- | |
|  | |
| ----- | |
| ----- | |
| 2018년 11월 27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. | |
| 공증사무소명칭 | 공증 인가 법무법인 민주 |
| 소 속 | 서울중앙지방검찰청 |
| 소재지표시 |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15, 7층 (반포동, 홍익대 강남관) |
| 공증인 | 공증담당변호사 분리도  |
| | |

210mm X 297mm
보존용지(1종) 70g/m²